

2022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'공공시설 내 전시 지원' 공모요강

□ 공모개요

- (공모명) 2022 공공시설 내 전시 지원 공모
- (공모기간) 2022. 3. 18.(금) ~ 4. 18.(월) 17:00까지
- (지원대상) 국내 화랑, 미술품 대여업체, 전시기획사 등 민간단체
- (지원내용) 「미술공유서비스」에 등록된 신진작가의 대여·전시를 개최하는 경우, 기획·운영·홍보비용 지원
- (사업목적)
 - 작가의 전시 지원을 통한 미술시장 진입 기회 제고
 - 공공 및 의료시설 내 전시 개최를 통한 국민의 미술 향유·소장 기회 확대

□ 공모내용

- (지원자격) 공공·의료시설, 사회적경제조직, 작은미술관 내 공간에서 미술품 대여·전시를 진행 하고자 하는 화랑, 대여업체 등 민간단체

- ① 단체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
- ② '20년 1월 이전에 설립된 단체로 '20년~'21년에 매년 2회 이상 ① 기획전 개최 또는 ② 미술품 대여·전시 경험이 있는 단체

- * 둘 중 하나 만족 시 지원 가능
- * 연 2회 이상, 총 4회 이상의 실적을 지원신청서 내에 증빙 필수 (* 같은 연도 내 동일 공간 전시 실적은 한 건으로 인정)
- * 전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홍보물 자료(리플렛, 포스터, 배너, 광고 등) 또는 전시 전경 이미지

- ③ 「미술공유서비스」(www.k-artsharing.kr) 기관회원 가입 및 정보 등록 필수

- * 전화, 이메일, 홈페이지, 주소, 전시정보, 업체 소개 등록 필수

- (지원내용) 미술품 대여·전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

- ① 작품대여료 : 전시 출품을 위한 작품 대여비(지원금의 30% 이상 의무 책정)
- ② 미술품 운송·설치·보험료 : 작품 대여·전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술품 인도, 배송, 설치, 보관,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
- ③ 임차료 : 작품 대여·전시에 사용되는 가벽, 조명 등 물품 대여료 등
- ④ 홍보마케팅비 : 리플렛, 도록, 현수막, 배너, 캡션, 레터링 등 제작비, 온오프라인 광고비 (해당 대여·전시를 위한 별도의 홍보물만 지원 가능)

⑤ 국내여비 : 타지역 전시 진행 시 여비 지원(비행기, 기차, 고속버스 등 지역 간 이동 시에만 사용 가능/동일 지역 내 대중교통(버스, 택시 등) 사용은 불인정)

[지원신청할 수 없는 항목]

- *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
- * 상근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
- * 행사 답사비와 같은 전시 준비 비용
- *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
- * 과세사업자의 경우, 지원금 사용에 따른 부가세는 본 자부담에 적용 불가

○ (지원규모) 전시 공간 규모별 차등 지급

공간규모	65㎡ 이하 (약 20평 이하)	66~150㎡ (약 21~45평)	151㎡ 이상 (약 46평 이상)
지원금	600만원	800만원	1,000만원
의무 자부담	60만원	80만원	100만원

○ (사업기간) 2022. 5. 1.(일) ~ 11. 20.(일)

○ (지원조건) 아래 조건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

① 공공시설, 의료시설, 사회적경제조직, 작은미술관 등에서 전시 개최

- * 제공된 시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시설에 직접 연락하여 전시 세부사항 합의 후 이를 바탕으로 센터에 공모 지원 신청

② 전시 기간 두 달 이상 계획 필수(단, 시설과 협의 후 기간 조율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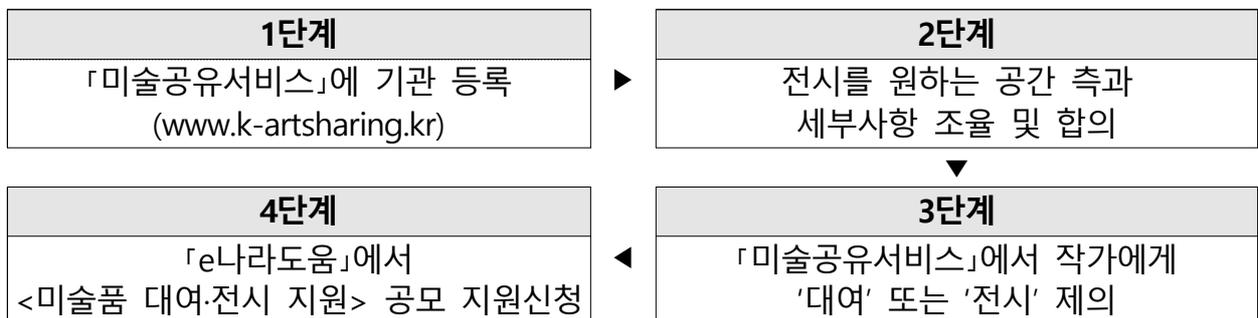
③ 단체별 최대 2곳까지 신청 가능

- * 2곳 신청 시 1곳은 반드시 제공된 시설 목록에 있는 시설에 지원해야함
- * 공간별 작가는 다르게 구성해야 함

④ 「미술공유서비스」에 등록된 작가로 최소 6명 이상으로 전시 구성 필수

- * 작가 구성 시 신진작가를 50% 이상 구성해야함(신진작가 기준 : '22년 1월 기준 만 45세 이하'77년 1월 이후 출생자)인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)
- * 전시 참여 작가가 미술공유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해당 작가 가입 및 정보 등록 후 지원
- * 프로필 이미지, 작가 소개, 작가 이력, 학력, 작품 이미지(5개 이상) 등록 필수

○ (신청절차)



○ (선정단체 의무사항) 아래 사항 불이행 시 차기년도 공모 심의에 반영됨

- 모든 홍보 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, 미술공유서비스 로고 삽입
-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제출
-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
- 교부신청 시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내 전시 현황 작성 및 정산·실적보고서 제출 후 전시 실적 작성 필수
- 「시각예술 시장조사」 응답 필수

○ (지원자격 제외대상)

-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
- 학교(초·중·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
- 지방자치단체(광역시·도·군 등 기초 자치 단체)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
- 국·공·시·도·군립 문화예술기관
- 관례적인 회원전, 단체전 및 학교 단위의 졸업 작품전 등
- 보조금 관계법령 지원금 관리규정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위반 행위 처리기준에 따름
- 공모일 이전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단체
-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

- (유의사항) 해당 대여·전시로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 택일

□ 공모접수

- (접수기간) 2022. 3. 18.(금) ~ 4. 18.(월) 17:00
- (접수방법)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「e나라도움」에서 신청
- * 접수기간 내 「e나라도움」에서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

- e나라도움 : www.gosims.go.kr
- e나라도움 이용 관련 문의 :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실 1670-9595
- e나라도움 이용 시 단체명으로 회원가입 필수(개인명의 불가) 및 공인인증서 필요

- (제출서류) 「e나라도움」에서만 제출 가능, 이메일 제출 불가

구분	제출서류	제출방법
1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각 1부	e나라도움에서 직접 작성, 제출
2	지원신청서(센터 지정서식, hwp) 1부 * 예술경영지원센터(www.gokams.or.kr) 공지사항 ▶ 본 공모요강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	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
3	단체 증빙서류 2부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	

구분	제출서류	제출방법
	② 대표자 국적 증빙 :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*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정보 삭제 필수	
4	대여·전시 포트폴리오 1부 (PDF파일, 20페이지 이내) * 해당 파트너기업 및 공공·의료시설에 공유되는 서류로, 교부신청서 상 주요내용 포함 - 지원단체 소개, 전시기획 설명, 참여작가 및 작품 설명 - 전시 홍보전략, 전시 중 작품 관리 방안 및 작품/공간 파손 대책안 * 전시 2건 지원할 경우 포트폴리오 각각 제출	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
5	장소 사용 허가 증빙 서류 * 공간사용 허가서, 공간 사용 합의서, 무료 대관 계약서 등 * 문자, 이메일 등 캡처본으로 증빙 가능 * 지원신청서 내 삽입 및 별도 파일로도 제출	

□ 심의개요

- (심의일정) 2022. 4월 3주 ~ 4주
- (심의방법) 정량심의(센터 평가지표), 정성심의(시설)
- (결과발표) 2022. 4월 4주 / e나라도움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

□ 심의방향

- 작가의 시장 진출 및 국민의 미술품 향유, 소장 기회 확대 여부 고려
-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경우 과거 사업 수행성과 반영

□ 심의기준(안)

평가항목	평가지표	평가주체
신청 자격 및 지원조건	- 과거 기획전 개최 실적 및 성과 정도 - 필수 서류 제출 여부 - 미술공유서비스 가입 및 정보 등록 여부 - 의무 자부담 책정 여부 - 참여 작가의 미술공유서비스 가입 및 사전 정보 등록 여부	센터 (정량심의)
과거 사업 수행성과 (과거 동일 사업 선정단체만 해당)	- 필수 서류 불성실 작성 및 기한 내 제출 불이행 여부 반영 - 과거 사업성과 반영 - 「미술공유서비스」에 과거 사업실적 작성 시 가점 부과	
사업의 기획력 및 계획의 구체성	- 작가/작품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(포트폴리오 기준) * 센터가 심의 기준 및 지표 제공 * 각 시설이 상기 지표에 따라 점수 부여	시설 (정성심의)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수정 불가
-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(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)
 - *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, www.gosims.go.kr) 내에서만 가능
-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
 - *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교부 확정 후 사업의 규모(작가 및 작품의 수 등)가 축소될 경우 지원결정액이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음
- 지원신청 내용(과거 대여 전시 이력, 전시 장소 등)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됨
- 과거 수행했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
- 공모 이전 수행했던 지원 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, 해당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 교부 진행이 가능함
-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 - *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 - * 예 :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 변경, 축소 및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, 예술경영지원센터의 ‘코로나 19 대응 지침’에 근거하여 기·미집행 보조금 인정범위가 결정될 수 있음
-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(2021.1.5.) 제10조에 따라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

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
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
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
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
 취소할 수 있음.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
 자(프리랜서 포함)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(서약서 및
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)를 해야 함

※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

(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(2021.1.5.) 제10조 참고)

제10조(보조금 교부조건) ① 주관부서의 장은 「보조금법」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

가~마. (생략)

바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
사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
2~3. (생략)

4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

가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제14조의2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

나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13조의2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

②-④ (생략)

-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. 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6조의2 제1항의 ‘불공정행위’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

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

☞ **'문화예술용역'이란?**

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

□ **문의**
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유통팀 02-2098-2919 / artre@gokams.or.kr